다. 부의안건 세부 내역

- 제 2 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2025년)*		*당기(2026년) 한도*	*증감율*
	한도	집행		
이사	1,000 백만원	286.1 백만원	1,000 백만원	-

- 제 3 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2025년)		당기(2026년) 한도	증감율
	한도	집행		
감사	100 백만원		100 백만원	-

- 제 4 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신규선임여부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경환	1987.05.21	신규	2년	없음	이사회
허영서	1983.03.19	신규	1년	없음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오경환	에코프로 재무 IR 실 이사대우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삼정회계법인 - NH 투자증권 - 에코프로 재무 IR 실장	해당사항없음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허영서	상산팀 반장	- 신안산대학 환경과학과 - 동부건설 중앙제어실 - 경주환경에너지 중앙제어실 - ㈜에코프로 CnG 생산팀	해당사항없음

- 제 5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신규선임여부 등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장훈	1986.06.18	신규선임	2년	없음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조장훈	에코프로 경영관리실 이사대우	-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 삼정회계법인 IM1 - 에코프로 경영관리실장	해당사항없음

- 제 6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안
제35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의 의무)** ①---------- 회사 및 주주를 ----------. ②----------. ③----------. ④----------.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등기이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②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③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37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독립이사는 ---)----------.
제38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내부거래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38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 2. ---------- 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

- 제 7 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3. 용어의 정의
3.1 임원
본 규정의 임원이라 함은 인사발령에 의한 상무 이상 임원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3.2 주관부서
회사 내 기획업무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3 연관부서
회사내 임원 퇴직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td><td>3. 용어의 정의
3.1 임원
본 규정의 임원이라 함은 회사와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가(EP, 명인), 상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의 직위를 부여 받아 회사에 상근하며 회사가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집행 책임자를 말한다.
3.2주관부서
본 규정의 기준을 수립하고 보상의 확정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내 HR업무부서를 말한다.
3.3 연관부서
회사내 임원퇴직금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td></tr>
<tr><td>5. Rule
5.1 퇴직금 산정
5.1.1. 회사 및 그룹내 관계사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임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

5.1.2. 퇴직금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table>
<tr><td>직급</td><td>상무</td><td>전무부사장</td><td>사장,부회장,회장</td></tr>
<tr><td>지급률</td><td>3</td><td>4</td><td>5</td></tr>
</table>
5.1.3. 월평균보수는 제5.1.5 본문의 재임기간 중 지급받은 기본급 총액을 같은 기간 재임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td><td>5.1.1. ---------에코프로그룹(이하 "그룹")내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이하 "합산 재임기간")이 ----------.
5.1.2. ----------.
<table>
<tr><td>직급</td><td>전문가(EP,명인)상무</td><td>부사장</td><td>사장,부회장,회장</td></tr>
<tr><td>지급률</td><td>3</td><td>4</td><td>5</td></tr>
</table>
* 전무직위는 부사장으로 통합

5.1.3. "5.1.2."상의 '월평균보수'는 "5.1.1."의 '합산 재임기간' 중 지급받은 기본급 총액을 재임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책임경영 및 회사 성장발전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해 보수 중 기본급의 일부(또는 전부)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으로 대체지급하는 경우(기본급을 대체하는 자기주식의 지급이 여하한의 사유로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아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퇴직금 산정이 되는 기본급은 임원위임 계약서에서 체결한 총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td></tr>
<tr><td>5.1.5. 퇴직금은 재임 1년 이내에 임원위임계약이 종료되어 임원위임계약 종료시점에서 계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기간 1년 마다 "5.1.1항"에서 "5.1.4 항"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다. 단, 그에 따라 산정된 각 금액의 합계액을 회사 및 그룹 내 관계사 최종 퇴직시점에 지급한다.

<신 설></td><td>5.1.5. ----------계열회사----------.

5.2 특별공로금
5.2.1.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5.1"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2배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공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현저한 공로가</td></tr>
</table>

	있는 경우 2) 업무상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 3) 재임 중 사망한 경우

- 제 8 호 의안 : 등기이사보수규정 건(신설)

등기이사보수규정

1. 목적

등기이사보수규정(이하 "본 규정")은 주식회사 에코프로씨엔지(이하 "회사"라 한다)의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의 한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등기이사 보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등기이사 보수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등기이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등기이사에 대한 보수는 법령, 회사의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임원위임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을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등기이사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이사를 말하며, 사내이사, 독립이사(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한다.

3.2 보수

등기이사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기본급, 성과급 등을 포함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주관부서장

주관부서장은 HR실장으로 하며, 본 규정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도하고 본 규정의 제·개정을 준비·검토할 책임이 있다.

4.2 연관부서장

연관부서장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본 규정 사항에 의한 이사회 의결 등을 준비·수행할 책임이 있다.

5. Rule

5.1 보수액의 확정

개별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회사의 경영환경 및 경영성과, 등기이사의 업무 실적과 능력 및 담당 업무의 중요도, 동종/동급 기업의 등기이사 보수 수준,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1 사내이사의 보수액

사내이사인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임원위임계약서상의 보수액 및 제5.1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5.1.2 독립이사의 보수액

독립이사인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제5.1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5.1.3 기타비상무이사의 보수액

기타비상무이사인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는 제5.1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5.1.4 등기이사 보수 총액의 한도

모든 등기이사의 연간 보수를 합산한 총 한도(이하 "보수 한도")는 10억원으로 하며, 모든 사내이사와 독립이사의 연간 보

수액을 합산한 총액은 보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5.2 보수의 지급 방식 및 시기

5.2.1 보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에 등기이사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황,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2 등기이사가 임기 중 퇴임하는 경우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2.3 보수의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6. 기타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단, 보수 한도의 증액을 수반하는 개정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1 본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등기이사의 보수는 본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2.2 본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는 새로운 보수 한도를 정하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